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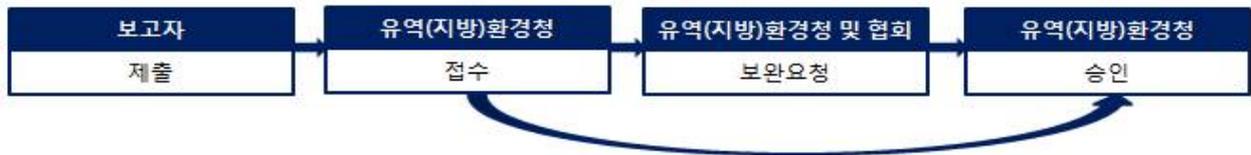
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

□ 2018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개요

-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전년도 ('17. 1. 1 ~ 12. 31)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·판매한 자는 2018. 6. 30. 까지 화학물질명, 취급량,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.
※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보고방법
 -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<http://kreach.me.go.kr>) 온라인 제출
 - ※ 서면제출시 '화평법 별지 제1호 서식'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

□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안내

- 보고서 처리 절차



-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방법 안내
 1.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<http://kreach.me.go.kr>) 접속
 2. 보고서 상태 : [추가보완중] 클릭
 3. 접수번호 클릭하여 보고서 열기
 4. 좌측 상단 [추가보완사항 보기] 클릭하여 보완요청 사유 확인
 5. 보고서 수정
 6. 우측 상단 [저장] 클릭
 7. 좌측 상단 [최종제출] 클릭
※ “2018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-보완요청” 참조
-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기한 : 2018. 12. 31. 까지 처리 요청
※ 미보완시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별도 확인 가능
- 국외제조·생산자 비협조로 인해 보완처리 불가 경우
 - 미보완 보고서 확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
 - ※ 미보완 보고서 확인서 서식은 각 유역(지방)환경청 홈페이지-정보마당-부서별 자료실-화학안전관리단(화학물질관리과) 참조

□ 문의번호 안내

-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: 02-3019-6770
- 유역(지방)환경청 (삭제 및 반려 처리시 참조)

기관명	관할구역	연락처
한강유역환경청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	031-790-2894
낙동강유역환경청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(하동군, 남해군 제외)	055-211-1694
금강유역환경청	대전광역시, 충청북도(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)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	042-865-0766
영산강유역환경청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제주도, 경상남도 남해군, 하동군	062-410-5263
원주지방환경청	강원도, 충청북도 충주시·제천시·괴산군·음성군·단양군	033-760-6444
대구지방환경청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053-230-6598
새만금지방환경청	전라북도	063-238-8935